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5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등)	3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에 대한 허가 와 변경허가 규정의 분리 등(안 제6조의2 신설 등)	6
3.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의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의 변경 등(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등)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05.
3. 회 부 일 : 2024. 08.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과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등)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총포뿐 아니라 화약류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포 안전관리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총포 안전관리</u>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 ----- <u>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u> <u>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u>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u>총포 안전관리</u>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 <u>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u>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u>총포 안전관리</u>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생략)	⑥ ----- <u>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u>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법은 제3조의2에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화약류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두지 않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화약류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포 안전관리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위험 방지와 공공안전 유지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화약류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규정의 분리 등(안 제6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함)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고 판매소의 구조·시설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① 총포 중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제외한 총포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발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 ----- ----- - 제6조의2, 제6조의4 ----- ----- -----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신설>

-. -----

----- 제6조의2,
제6조의4-----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

--. <후단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u>·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u> <u>·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u> <u>· 석공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생략)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생략)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 ----- ----- ----- -----.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략)

② (생략)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3-----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6조의4-----

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총포(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 엽총 · 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 · 제3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생략)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제6
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0조의2(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6조의2 본문, 제9조 제1항-----

--

2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하는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상습범) -----

-----제70조의2(제1항제2호의2는 제외한다)

제71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2. (생략)

2. ~ 8. (생략)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1. -----

-----제6조의2 본문(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항-----

1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1.</u> (생략) <u>1의2.</u> (생략) <u>2.·3.</u> (생략) <u>3의2.</u> (생략) <u>4. ~ 7.</u>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u>제6조의3</u>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 4. (생략)	----- ----- -----. 1. 제6조의2 단서(<u>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u> 해당하는 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5.</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6.</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u>7. ~ 10.</u>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73조(벌칙) ----- ----- ----- -----. 1. -----<u>제6조의4</u>----- ----- ----- ----- ----- 1의2. ~ 4.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시설 등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판매업 허가규정과 판매업 변경허가 규정을 분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형사처벌의 기준과 관련하여 경미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위반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형량을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는 경미한 부분의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판매업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3.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의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의 변경 등
(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등)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 폐기, 운반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화약류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경찰청장의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생략)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 찰청장이 고시하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제19조(취급 금지) ----- ----- ----- ----- ----- ----- ----- ----- -----제6조의3제1항----- -----

· 석공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 ④ (생략) ⑤ 화약류의 폐기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생략)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경찰청장이 고시하는</u>-----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경찰청장이 고시하는</u>----- ----- ----- -----. ----- -----.
---	--

화약류의 발파·연소·폐기·운반은 전문·기술적 분야로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화약류 등과 같은 위험물질의 안전 문제는 공공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규제 기준을 국무회의를 통해 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화약류 관련 기술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하는 것 뿐 아니라 같은 법규명령이지만 대통령령보다는 절차가 간단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어떤 방안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최신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취급 사항을 고시로 정하게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